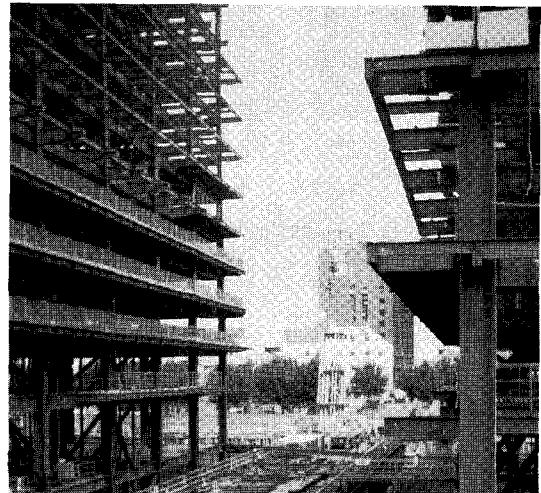


改正

회계예규·고시·통첩 전문



지난 7월10일 재정경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하도급보호자를 위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확정 의결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건설업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건설업법에 개정되어 민간공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공사업체의 최대 숙원이었던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제도가 행정쇄신위원회의결을 통해 시행이 확정되기까지는 우리 대한설비공사협회(회장 이동락)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그동안 이동락 회장을 중심으로 「건설하도급부조리의 공질적 병폐 척결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실시 및 신공법·신자재 설계반영」을 주장하고 그 개선 방안을 지난 5월26일에 개최된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미보증에 따라 원도급자의 부도시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체 연쇄 도산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을 상호 20% 범위내에서 발생한 실손액으로 보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등 건설교통부장관 주재 간담회, 건설관련단체장 간담회, 건설관련실무회의 등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했었다.

한편 이동락 회장은 선진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공법·신자재」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방지,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나 국내에서의 사용 실적이 미미하여 발주관서에서 채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포함한 시공상의 하자는 건설업체의 책임이므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되는 신자재 및 신공법을 발주자가 적극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한설비공사협회는 부실시공방지와 공사원가절감 및 시공상의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큰 선진외국의 신자재 또는 신공법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설계도상 명시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되는 품질시험검사서가 첨부되었거나 공사실적이 있는 것은 정부발주관서에서 적극 채택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내역입찰 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44,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역입찰의 대상)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양식) 계약담당공무원을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서식에 단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유, 부가가치세 등으로 포함한다)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트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계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발주관서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입찰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종내의 세부미목에 있어 “수량 × 단가 = 금액”의 계산착오로 정정된 산출내역서 총계금액과 입찰서금액과의 차액이 입찰서 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나. 입찰서금액, 산출내역서총계금액, 항목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경우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게 정정하여 이에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배분하여 수정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①)

○ 공사명 :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 고
항	목				단 가	금 액	
1.	공증별합계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2.	경비등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운						
5.	부가가치세						
	총 계						

종합계약 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51, '95. 7. 1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가를

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예규는 국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단,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계약”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중 2개기관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 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나.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설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이하 “인가권자”라 한다)한 사업설시계획서의 간설시설공사를 말한다.

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 조물을 말한다.

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장은 도로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예상금액
3. 공사기간
4. 공사장의 위치
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2조제2호 “나”목에 규정한 사업지역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주체는 건선시설공사 등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시 계획서에 간선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동 사업계획서상 동일 도로에서 집행될 공사의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 계획서를 제출받은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의

공사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그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 및 인가권자에게 통보한다.

④ 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경우 종합계약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⑤ 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를 지하구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공동굴착이 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가한다.

제5조(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들”이라 한다)은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들을 동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관(이하 “대표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공사로 판정이 난 공사중 도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로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예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제6조(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① 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자하는 경우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고 계약체결요청시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한다.

제7조(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① 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도로관리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도록 하며, 이 경우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제출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진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종합설계서 및 총 설계금액
3. 공사시간
4. 빌주방법 및 빌주예정시기
5. 공사장의 위치
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표관련기관은 종합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제14조 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관련기관협의체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집행계획서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시공, 감

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 혹은 종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 관련기관협의체는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 당해공사가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입찰공시 종합계약공사 중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선시설공사들은 복합공사로 발주토록 조치하고,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제12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각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예규 및 관련기관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의 위탁·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① 이 요령은 국기관은 위탁 또는 보조(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동 요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협의체) ① 관련기관협의체는 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협의체를 설치하여 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관련기관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성기관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며, 구성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보칙) 조달청장은 종합계약적격여부의 심사기준·심사기간·세부적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계약체결위탁시각 관련기관별 공사비분담방법 등 이 예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5 “종합계약집행요령”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중 대표관련기관과 여타 관련기관 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 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3조(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제4조(책임) 대표관련기관은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효력기관)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 간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관련기관은 여타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은 공사감독요원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관련기관의 고유기술 및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보증금의 부과등)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보관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각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여타관련기관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대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표관련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금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 요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제2조(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3조(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업무담당자 :)

2. (계약업무담당자 :)

제4조(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공사부문에 대한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 간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보증금의 부과등) ① 대표관련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보관한다.

② 대표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 선급금, 대가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비율만큼 분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분을 지급한다.

② 여타관련기관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금액을 부대비용으로 대표관련기관에 납부한다.

제9조(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관련기관이, 각자에게만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

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사전심사의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세부심사기준이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 기한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이상이어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람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

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는 제외한다.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 건설공사
8. 상수도(정수장 포함)건설공사
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립집회시설공사

제6조(심사기준)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들을 고려하여 작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신청한자의 제출서류를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50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만, 위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가 20인이상인 경우에는 20인이상 30인의 범위안에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게시판·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 종류별로 적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중대한 착오들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자의 처리)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년도 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에서 규정한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년도 동안 매년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 사항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공동계약의 주계약자일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사전심사의 면제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7-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폐지한다.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회계예규 2200.04-126,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범위와 이들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규정에서 사

용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

[별표] 사전심사기준 (제6조 관련)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비 고
분야별	배점한도	항 목 별	배점한도	
1. 시공경험	30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 공증인 등증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 5년간 도록·건축·전기·전기통신공사 또는 플랜 트공사의 실적합계	22 12 8	“가”와 “나”는 택일 적용 * 시공증인 등증공사의 실적은 당해공 사의 예정공정표상 50% 이상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 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기술능력	40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포 함)상황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상황 라. 기타 당해공사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20 10 5 5	* “나”, “다”항의 설비·장비·특수공법 및 기술은 건설업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계열화된 하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
3. 경영상태	30	가. 직전년도 부채비율 나. 직전년도 유동비율 다. 직전년도 매출액 순이익률 라. 직전년도 총자본회전율 마. 최근 3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 2) 최근 3년동안 건설업법에서 정한 과태료처분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1년동안 계열화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실 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2) 최근 1년동안 하도급계열화 미흡 또는 불공정하도 급거래로 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 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표준안전 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4) 최근 3년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입찰질서 관련사항 1) 최근 1년동안 당해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예 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2회이상 낙찰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동안 당해 기관이 실시한 공사 입찰·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 실이 있는 자 마.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별점 기준」 에 해당되는 자	7 7 5 5 5 6 + 5 - 5 + 5 - 5 ± 5 - 3 - 3 - 10 - 2 - 2 - 10 + 2	*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 * 직전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 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자료에 의함 * 가점과 감점 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상계하여 평가
4. 신인도	± 20			

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에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분할계약의 금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조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부칙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26-8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 '95. 7.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textcircled{○} \text{ 재료비} = \text{재료량} \times \text{단위당가격}$$

$$\textcircled{○} \text{ 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단위당가격}$$

$$\textcircled{○} \text{ 경비} = \text{소요(소비)량} \times \text{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조원가계산

제6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 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의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등은 그 매각에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기본급(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제정경제원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 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미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

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

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사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장 공사원가계산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비 및 직접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된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실제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함,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 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요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시 설 공 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기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 30억원미만	5.5	5천만원~ 3억원미만	5.5
30억원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4장 용역원가계산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23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연4백%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5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한다.

1.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계상하되 국내여비 지급은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 등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초청시의 회의비를 말하며, 당해년도 예산편성기준상 2급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 수당을 기준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6조(일반관리비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학술연구 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순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4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6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6조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제5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9조(등록대상기관 및 등록요건) 시행규칙 제

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등록대상기관으로서 제2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중 공인회계사 1백인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의 합동회계사무소

2. 등록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부기자격 2급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각 “2인”중 1인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제1호 “나”목등록대상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일 것.

라. 제1호의 등록대상기관으로서 지사·지부의 경우에도 제2호 “가” “나” “다”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호 “나”목 등록대상기관의 등록요건으로서 제2호 “다”목의 기본재산이란 당해용역기관의 기본재산을 말한다.

제30조(등록신청 및 고시)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기관으로 등록하

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7의 용역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기동록·고시된 용역기관에 대하여는 제31조 각호에 규정된 서류 및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학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제29조제1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설립허가서 1부
4. 제29조제2호 “나”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증명서 1부
5. 제29조제2호 “다”목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등 1부
6. 원가계산실적자료 1부
7. 원가계산을 위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
8. 용역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책임성있는 업무수행을 확약 하는 각서 1부.
9.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고서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29조의 각호의 규정된 등록기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이 원가계산 용역의뢰의 규모와 용역기관의 수등을 고려하여 공신력제고 및 원가계산용역업의 전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를 아니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별표 6의 용역기관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31조(기동록·고시된 용역기관) ①등록·고시된 용역기관은 이미 제출된 제30조의 각호의 서류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는 변경유무를 불구하고 매년 5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호 “나”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시근무자의 갑근세증명서 1부
2. 제29조제2호 “다”목을 증명하 수 있는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1부
3. 원가계산실적자료 및 원가계산실적증명서 1부
4.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고서

②기동록·고시된 용역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조사·분석보고서 등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지도 및 등록취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용역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용역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역기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의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다만, 동조 제2호 다목의 경우는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누적결손등으로 인하여 1/2이상 잠식된 경우에 한한다.
2. 부실원가계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와 담합하거나 국고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

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3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위반한 경우

5. 등록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공신력 및 책임성있는 용역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3조(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당당공무원은 용역기관으로 등록되어 관보에 고시된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계약당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특례설정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당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 (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 결정 및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정부제정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여 일간신문에 고시하는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다만, 외화의 매입 규모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9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은 폐지한다.

[다음호에 계속]